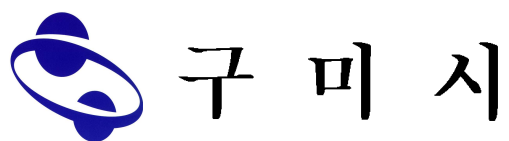


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

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 고아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·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(5년)이 2015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서 규정한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재산현황

- 1) 시설명 :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
- 2) 위치 : 구미시 고아읍 농공단지길 36-28((☎482-8789)
- 3) 대지면적 : 5,831.4m²
- 4) 시설용량 : 540m³/일
- 5) 설치비 : 1,046백만원
- 6) 처리방법 : 활성슬러지법(유기물처리) + 가압부상법(총인처리)
- 7) 준공일 : 1990년 10월(오·폐수유입, 우수배재분류식)
- 8) 주요시설 : 건물 및 시설물, 기계·전기부대시설, 실험기자재 등

나. 위탁기간 : 2016년~2020년(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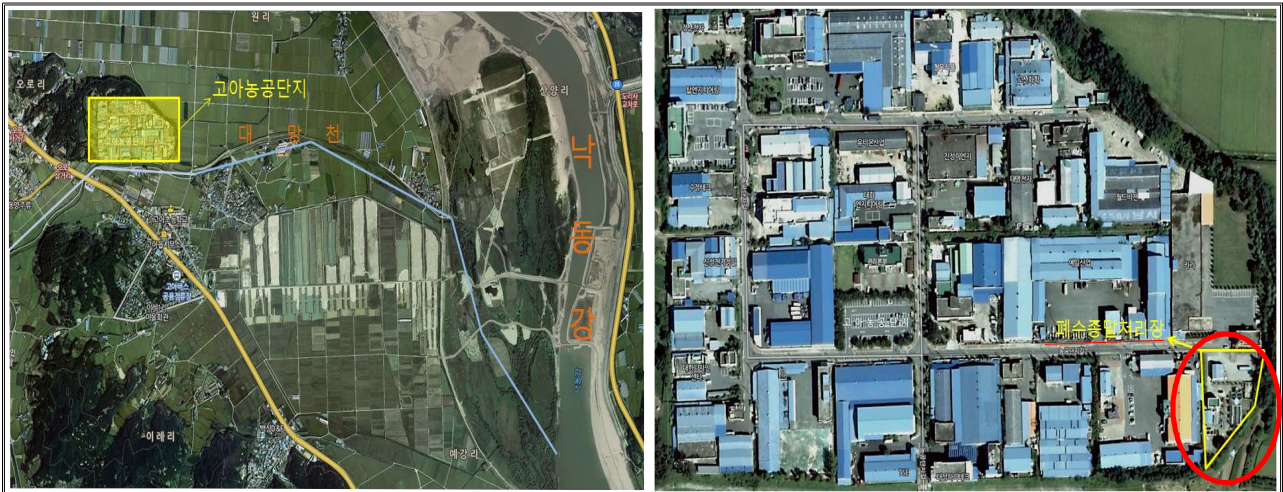
다. 위탁방법 : 위·수탁 협약체결에 의함

라. 위탁운영비 : 입주기업체 자부담

마. 위탁사무

-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
-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및 부과·징수, 적립업무
- 기타 운영관리에 관한사항

[위 치 도]



3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가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

나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

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
라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
마.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
바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2

사. 「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」 제4조, 제4조, 제19조

재 산 현 황

구 분			건 물		토 지		비 고
			동 수	연면적 (㎡)	필 지	면적 (㎡)	
합 계			2	177.8	1	5,831.4	
공 유 재 산	행 정 재 산	공용 재산					
		공공용 재 산	2	177.8	1	5,831.4	관리동, 기계실, 충인처리시설동
		기업용 재 산					
		보존용 재 산					
	일 반 재 산	행정 재산 외 모든 공유 재산					

위탁시설 현황

<건축물 현황>

명칭	면적 / 연면적	사 용 용 도
관리동 (지하1층, 지상2층)	68.04㎡ / 122.92㎡	폐수처리장관리사무소 및 기계실
충인처리시설동 (지상1층)	54.88㎡ / 54.88㎡	충인처리시설 가압부상조

<시설물 현황>

명칭		규격	용량	수량	비고
유입펌프장		3mW×5mL×1.9mH	28.5m ³	1식	
침사지		0.5mW×6mL×1.5mH	4.5m ³	1식	
유량조정조		6mW×12.9mL×3.5mH	270m ³	1식	
폭기조		4mW×14mL×3.7mH	207.2m ³	2식	
최종침전지		Φ5.3m×3.4mH	74.9m ³	2식	
총인 처리 설비	반응조	1.2mW×1.2mL×1.2mH	1.728m ³	1식	가압고액분리장치
	응집조	1.2mW×1.2mL×1.2mH	1.728m ³	1식	
	가압부상조	Φ2.0m×2.4mH	7.54m ³	1식	
	스킴저장조	1.5mW×1.5mL×1.5mH	3.375m ³	1식	
자외선소독기		540m ³ /일	-	1식	
농축조		1.5mW×1.5mL×4.2mH	9.45m ³	1식	
탈수기		Belt-Press	2.5~6.0m ³ /hr	1식	1,000mm폭
방류수조,소독조		3mW×2mL×3mH	18m ³	1식	
배수펌프장		0.6mW×0.6mL×0.8mH	0.3m ³	1식	
상기외 기타 시설물 일체 포함					

<기계 현황>

명칭	규격	용량	수량	비고
세목스크린	0.5mW×1.5mH×10mm		1	기 존 설 비
송풍기	Φ80×4.0CMM×4,000mmAq	7.5kw	2	
산기장치	500~700L/min		1	
원수이송펌프	Φ50×0.2CMM×8mH	0.75kw	3	
배수펌프	Φ50×0.1CMM×8mH	0.75kw	1	
송풍기	Φ80×4.0CMM×4,000mmAq	7.5kw	3	
산기통	500~700L/min		1	
소포수펌프	Φ65×0.21CMM×15mH	2.2kw	2	
소포노즐	8L/min×20A		26	
산기장치인양기	0.5Ton chain block		2	
슬러지 스크레이퍼	Φ5.3m×2m/min×15mH	0.4kw	2	
반송슬러지 펌프	Φ65×0.4CMM×10mH	3.7kw	2	
NaOCl 탱크	Φ500mm		1	
농축슬러지이송펌프	Φ40×0.1CMM×8mH	0.75kw	2	
슬러지교반기	60rpm	0.75kw	1	
슬러지혼화조	2.0m³		1	
염화제2철 탱크	0.5m³		1	
슬러지 공급펌프	15L/min×5kg/cm²	0.75kw	2	
탈수기	2000L/회		1	
케이크운반기	0.5m³	7.5kw	2	
조목스크린	1.0mW×1.0mL×20mm		1	
원수유입펌프	Φ100×1.4CMM×10mH	7.5kw	2	
상기의 기타 기계류 일체 포함				

명칭	규격	용량	수량	비고
부상조이송펌프	80A×0.38m³/min×10mH	1.5kw	2	총 인 처 리 설 비
가압부상조스컴스키머	3m/min	0.4kw	1	
가압수공급펌프	50A×0.08m³/min×60mH	2.2kw	2	
공기압축기	138 ℓ /min×9.9kg/cm²	0.75kw	2	
가압수용량시스템	Φ300×Φ450×2.0mH		1	
부상조제어판	800mmW×500mmD×2,000mmH		1	
PAC공급탱크	1m³		1	
PAC공급펌프	219 ℓ /min×10kg/cm²		2	
폴리머 자동용해장치	500 ℓ /hr		1	
폴리머 공급펌프	938 ℓ /min×10kg/cm²		2	
스컴저장조산기장치	120Lmin×2EA		1	
스커이송펌프	50A×0.07m³/min×8mH		2	
PAC저장탱크	10m³		1	
PAC이송펌프	70 ℓ /min		1	
상기의 기타 기계류 일체 포함				

관 계 법 령

○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

제48조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 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(이하 "원인자"라 한다)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1. 한국환경공단
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(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
3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○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60조(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·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)

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. <개정 2009.6.26., 2010.2.18., 2011.10.28., 2012.7.5.>

1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
2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
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(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)

5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
5의2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)
6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 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6.21., 2015.7.20.>

○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○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

제48조의2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"시행자"라 한다)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부담금(이하 "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"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·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, 부과·징수의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3.7.30.]

○ 「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」

제4조(관리업무의 대행) 시장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오·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. <개정 2015.3.11>

제14조(시설설치비의 부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장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(이하 "시설설치비"라 한다)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3.11>

1.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(이하 "최초사업자"라 한다)
2.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(이하 "증설사업자"라 한다)

②제1항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【별표1】 과 같다. <개정 2015.3.11>

제19조(유지관리비의 부담) ① 사업자는 오·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(이하 "유지관리비" 라 한다)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【별표2】 와 같다.

③소장은 처리장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매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11>

소관 실·과		환경안전과
입 안 자	담 당 관	문 경 원
	담 당	우 준 수
	담 당 자	김 형 순 (480-5282)